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노인재활 인정의 제도 규정

제정 : 2016년 11월 28일

개정 : 2018년 06월 13일

개정 : 2020년 12월 14일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이하 본 회) 노인재활 인정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의의】

본 회가 인정하는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은 본 회 전문의사로서 노인재활 연구,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 제 3 조 【인정의 관리】

노인재활 인정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 수행은 기획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제 4 조 【인정의 자격 요건】

본 회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인증시험(이하 본 시험)에 응시자격을 가지는 회원 중,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을 부여한다. 응시자격은 다음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1. 자격인정 신청 시 본회 정회원으로 본 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집담회에 참가하여 취득한 평점의 총점이 3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2. 본 회 회원이면서 3년 이상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정의 시험 응시 시점에서 3년 이내 취득평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3. 본 회 준회원인 전공의일 경우 수련 과정 중 1항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정회원에 준하여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증은 본 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발부함.

### 제 5 조 【연수평점】

1. 각 연수교육의 이수 평점은 다음과 같다.
  - a. 학술대회 : 100점
  - b. 집담회 : 50점
  - c. 리뷰코스 : 75점
2. 역대 회장 및 임원진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산점(50점)을 부여한다.
3. 본 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본 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인정하는 국내외 학술행사에 연자 혹은 좌장으로 참가한 경우 1회당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4.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와 본 회 기획위원회에서 정한 학술지에 노인재활 관련 논문과 종설을 게재한 경우, 주저자(제1저자 및 책임저자)에 대하여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즉, 노인재활의학회지의 경우 100점, 그 외 학회지에 대하여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5. 본 회가 수여하거나 인정하는 노인재활 관련 학술상 수상 시 매회 50점을 인정한다.

#### 제 6 조 【자격인증시험】

1. 본 시험은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2.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 등 필요 내용을 그 시험기일 1개월 전에 회장이 공고한다.
3. 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4.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기획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확정 발표하며, 회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5.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본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해당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재 응시 할 수 없다.

#### 제 7 조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 유효기간과 갱신】

노인재활 인정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노인재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격 갱신이 필요하며, 관련 업무는 기획위원회에서 담당한다.

1. 인정의 자격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본회는 인정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해당 인정의에게 만료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인정의는 인정의 자격증에 명시된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갱신자격 인정기준은 인정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연수교육 평점 30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한다.
4. 기획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자격의 갱신 여부를 판정하고, 자격 갱신된 자에 대하여 본 회에서는 인정의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시 갱신료 5만원을 징수한다.

5. 5년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갱신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인증의 자격은 정지된다. 이러한 정지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300 평점 외에 초과 1년당 100점을 추가하면 갱신자격이 주어진다. 정지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인증의 자격은 상실되며, 단, 본 시험에 새로 응시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2018년 이전에 시행한 인증의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이 규정을 소급 인정한다.